

허가신청서
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변경허가신청서
 변경신고서

※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(신고인)이 작성하지 않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시	처리기간 허가·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
신청인	성명(업체명)	전화번호	
	주소		
별채 허가 (신고) · 매각 (산림사업) 사항	지방자치단체/국유림관리소		
	허가(신고) 또는 매각(산림사업)번호	허가(신고) 또는 매각(산림사업) 일자	
	허가기간		
	수허가자 또는 매수자		
	임산물 소재지		
	별채목적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확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종갱신 <input type="checkbox"/> 숲가꾸기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지개발 <input type="checkbox"/> 산림병해충 방제 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산불 피해목 <input type="checkbox"/> 풍해·수해·설해 피해목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	작업종	수종	
	별채면적(㎡)	본수(본)	

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	신청(신고) 내용	수집 면적 (㎡)	수집예정수량		
			재 적(㎡)	중 량(톤)	
		합 계		침엽수	활엽수
	수집기간				
	별도 수집 또는 변경사유				
	변경내용				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3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
 허가(변경허가)를 신청합니다.
 ·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
 변경신고 합니다.

년 월

일

신청인
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 시장·군수·구청장· 귀하
 지방산림청장

첨부서류	1. 허가 신청의 경우 가.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나오게 하는 별체가 합법벌채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4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증·입목벌채 신고수리증 2)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 3)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4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 5)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6) 그 밖에 1)부터 5)까지에 준하는 서류 나.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 2.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. 제1호나목의 서류(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나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합니다)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않고 수집한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